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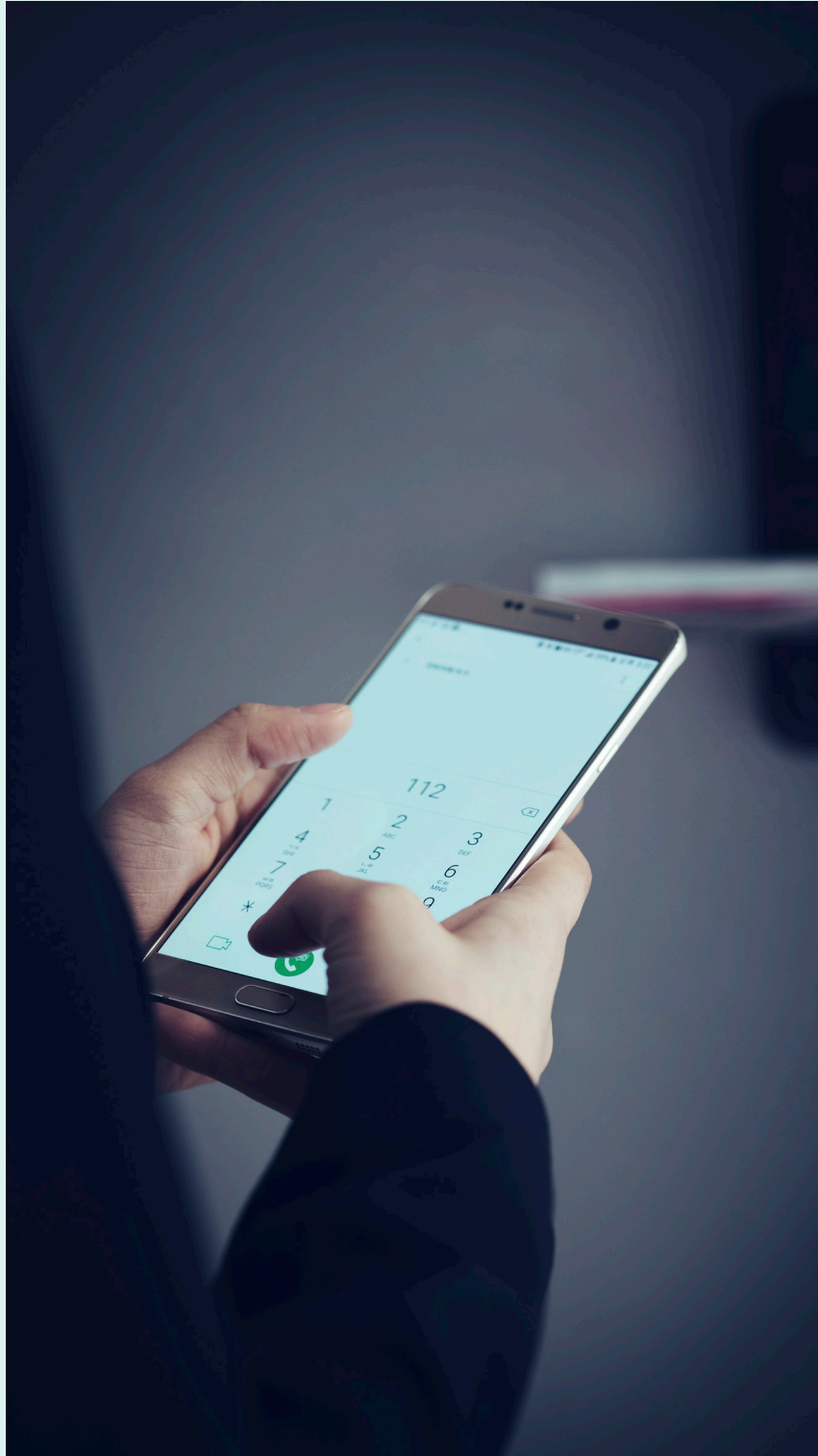
# 02

---

##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논란 속 '취재원' 보호

정신교 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 I. 들어가며

2019년 6월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YG, 이하에서는 'YG'로 약칭)와 경찰의 유착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씨의 실명이 특정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공익신고자의 인권과 신변안전이 중대한 위협에 처해졌다.<sup>1)</sup>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모씨는 2016년 자신의 마약 관련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YG소속 가수 김 모씨가 마약을 구해 달라고 해서 구해줬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의자 신문조사에 가수 김 모씨의 관련 기록이 없어졌으며 진술 당시 김 모씨의 마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지문 날인을 위해 조서를 보니 김 모씨의 관련 내용은 사라져 있었다고 밝히며 경찰과 YG와의 유착을 의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 혹은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그뿐만 아니라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1항). 특히 범죄관련 보도는 제보자의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 제보자의 2차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히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1) 소봄이 (2019, 6, 14). "비아이 마약 끝까지 말려...사건 핵심은 '양현석' 한서희가 전한 심경.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14502974?OutUrl=daum>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최근 언론사가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한 경우, 또는 비실명보도를 하였더라도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경우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해당 인건을 시정권고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해당 유형의 보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및 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심의 대상인 2,658개 매체에 전달했다.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부패행위 보도)를 개정(2019. 8. 21.)하여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 범죄신고자 등을 포괄하여 보호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 조항<sup>2)</sup>을 마련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에 대해 공격적인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신고(고소, 고발 포함)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종래에는 취재원 보호와 관련하여 취재한 정보가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현재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언론인의 특권의 인정여부 문제, 범죄와 관련한 정보원이 공개되

2)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언론 보도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2019. 8. 21. 개정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는 다음과 같다.

제8조(신고자등 보호)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2. 부패행위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3.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② 제항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정보제공자를 확인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허용되는가에 대한 문제 등이다. 지금도 이와 같은 문제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주요한 논제이다.

## II. 취재원 보호에 대한 논의

### 1. 언론의 법적 책임

#### 1) 언론 보도와 명예훼손 법리

취재원<sup>3)</sup> 보호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언론 보도로 인하여 언론사나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이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형법 제309조)를 처벌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도로 인해 개인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민법 제750조 이하 규정 및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i)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ii)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iii)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iv)침해행위의 위법성 등이 명예훼손 책임 성립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일정 부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구성된다. 즉 기사 작성, 보도하는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침해 행위가 될 수 있고, 보도가 100% 정확하지 않은 이상 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 형법 제310조는 “언론·출판을 통한 사실적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sup>4)</sup> 즉 보도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경우에도 그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 2) 취재원 공개와 법적 책임

언론사나 기자가 명예훼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사 입장에서 보도된

3) 취재원이란 뉴스를 취재하는 언론출판 기자들에게 뉴스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원으로, 협의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뜻하며, 광의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집필자, 원고의 제공자, 투고자 등을 포함한다. 즉, 취재원은 기자가 취재하려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적 취재원과 비인적 취재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취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후자는 예컨대 재난현장 등과 같이 그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뜻한다(이희훈 (2008). 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입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4)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문서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으나, 의혹보도 또는 범죄보도의 경우에는 취재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언론사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취재원을 공개하는 것이고 상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또한 취재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다. 만약 언론이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다면 그 보도는 허위 보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언론사 혹은 기자는 민사상 패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언론은 취재원을 공개해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취재원을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취재원 보호가 문제되는 또 다른 경우는 수사기관이 언론 또는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다. 취재원 보호를 명문화한 법적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의 언론사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검찰은 2003년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향응접대과정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찾기 위해 SBS 본사에서 영장을 집행했고, SBS는 취재원 보호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제출을 거부했다. 2007년에는 신동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기자의 e-메일을 확보하려 했고, 신동아 측은 범죄혐의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2009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방송사와 제작진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사정기관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를 거부할 권리를 지닌 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이다. 이들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보관하는 물건인 경우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 또는 기자의 경우는 열거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 혹은 법원의 법집행에 대한 대가는 형사처벌이다. 합법적인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압수·수색의 문제에서도 언론은 취재원을 보호할 것인지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 2. 취재원 보호의 역사

취재원 보호의 역사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주 헌법과 법률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논의되어 왔으며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인이 취재원을 밝히거나 증언해야 하는 강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을 언론인의 특권으로 보았다.

이처럼 언론인의 특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정부가 잘못하거나 행정의 부적절·비효율적이고 은밀한 작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sup>5)</sup> 미국 대다수의 주들은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연방차원의 입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취재원 보호는 신문의 자유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1877년의 독일제국형 사소송법(Reichsstrafprozeßordnung)이나 1874년 독일제국신문법(Reichspressgesetz)에서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입법의 시도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1926년 바이마르공화국 형 사소송법 제53조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증언거부권의 내용에 있어서 언론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1945년 바이에른 주와 헤센 주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한 주 신문법을 시행하였고 독일 연방차원에서의 증언거부권은 1950년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4호와 1953년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인정되었다.<sup>6)</sup>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12월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해 취재원 보호를 명문화하였다. 이 법 제8조 제1항은 “언론인은 공표 사항의 제보자 등의 신원이나 공표 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인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제8조 제2항은 “기사 내용에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규정도 삭제되었다.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다른 규정들은 정기간행물법, 신문법, 방송법 등으로 분리, 흡수됐지만,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도 입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다. 즉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취재원 보호 조항이 현행법에서 사라졌고,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취재원 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4월 17일 취재원 보호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의 제한과 취재원에 대한 보호, 그것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자, 검찰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통신내역을 조회하는 등 취재원에 대한 파악에 주력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취재원 보호 법안은 공익제보자의 익명 보호, 보도의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수사목적의 취재원에 대한 강제수사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보호의 범위를 법원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거부도 규정하고 있다.

5) Amanda A. Konarski, The reporter's privilege is essential to checks and balances being accessible to the American Electorate, 11 Seton Hall Circuit Rev, 258, 2014, p. 275.

6) Martin Löffler/Reinhart 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C. H. BECK, 2005, S. 200-202.



### 3. 미국과 독일의 취재원보호법

#### 1) 미국

미국은 1896년 메릴랜드 주에서 최초로 취재원보호법인 일명 방패법(Shield Law)이 제정되었고, 현재 40개 주에서 언론인의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재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sup>7)</sup>

이 법의 현대적 해석은 197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시한 ‘브랜즈버그(Branzburg) 대 헤이스(Hayes)사건에서 비롯됐다.<sup>8)</sup> 이 사건의 발단은 미국 켄터키 주의 루이빌쿠리어 저널의 폴 브랜즈버그 기자가 1969년 두 명의 젊은이가 마리화나에서 헤시시를 제조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작성한 기사를 보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켄터키 법원과 대배심원은 브랜즈버그 기사를 소환해 취재원이었던 두 젊은이들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브랜즈버그 기자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강요받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기자들은 취재과정에서 취재원 보호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을 밝히게 되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취재원과 취재

7) 이규호 (2012), 기자의 취재원 보호와 증언거부권. <민사소송>, 제16권 제2호, p.70.

8)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92 S.Ct. 2646, 33 L.Ed.2d 626 (1972).

물의 보호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외적으로 범죄와 명백하게 관련된 정보이고, 그 정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 중요하고 또한 그 정보가 사회적 이익에 압도적일 때에 한하여 취재원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브랜즈버그 사건 이후, 미국 법원들은 기사가 취재원의 관련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미국 미디어법의 역사에 가장 크게 기여한 판결로 남아있다. 해당 사안에서 언론사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취재원에 대한 기사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주요한 판례로 인용되고 있다.

〈표1〉 미국의 취재원 보호법 요약

구분	언론인 증언거부권
수정헌법 제1조에서의 보호	‘브랜즈버그(Branzburg) 대 헤이스(Hayes)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을 부인하였으나 하급법원들의 재해석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연방(federal) 법률에서의 보호	없음
주(state) 법률에서의 보호	방패법(Shield Law)이 1896년 메릴랜드 주가 최초로 제정하였고 현재 40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음

## 2) 독일

독일은 민사소송법상 기사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이 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제작하거나 또는 방영함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협력하거나 협력했던 자”의 증언이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독일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5호)<sup>9)</sup> 뿐만 아니라 보도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유출되면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기사화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언론사나 기사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증언거부권을 독일기본법과 민사·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다른 직업군 종사자의 증언거부권보다 언론인의 증언거부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예컨대 의사·변호사 등에 대해 비밀주체가 비밀을 해제한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그러나 언론인의 증언거부권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는 언론인의 증언거부권에 있어 언론의 자유와 결부하

9) 김민정 (2015). 취재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p.138.

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즉, 취재원의 비밀보장이 담보될 수 있을 때 언론기관이나 언론 종사자에게 취재원이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더 나아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의 증거거부권은 개인의 증거거부권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공적인 의사형성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자유언론제도는 그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 III. 취재원 보호의 입법적 노력과 방향

#### 1. 취재원 보호 가이드라인

취재원의 보호는 법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대한 특권의 인정도 중요하다.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언론인의 최고의 가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는 일반국민에 대한 것이고 저널리즘은 이러한 진실에 대한 확신이 그 본질이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언론인은 보도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전문가로서 언론인의 양심과 의무가 전제된다면 취재원에 대한 보호는 당연한 가치일 것이다. 입법기관이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형사사법기관은 입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고려한 취재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범죄 사건만을 특화한 취재원보호준칙은 없다. 각 방송사는 방송사 심의규정, 방송보도 심의규정 등을 두고 있다. KBS의 경우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범죄보도의 원칙과 주의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범행을 미화하거나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말 것,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 범죄 전과나 시효만료된 사건은 신중히 취급할 것 등을 적시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범죄보도 가이드라인에는 범죄를 고무유발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방영을 금지할 것, 범죄 수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나 시연은 불법행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백히 편집할 것 등의 내용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 이후 언론인을 소환할 경우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다. 미국 연방규정(28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우리 사법행정기관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sup>10)</sup>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언론인에 대한 소환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안별 검토가 원칙이며 정보의 이익과 상당한 법집행 사이의 공적이익을衡量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

10) 조재현 (2018).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보호의 입법방향. <한국부패학회보>, 제23권 제2호, p.89.

다. 이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언론인을 소환할 경우 그 전에 다른 방법에 의한 정보취득을 먼저 고려하고, 언론사, 대배심, 법원 등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도록 요구한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형사 사건 뉴스정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어떠한 법 적용으로부터 언론사의 구성원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언론인으로부터의 정보 요구는 국가안전보장, 공익, 언론의 자유 등 핵심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법기관이 언론인을 소환할 경우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i)언론인의 정보수집 또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은 그러한 위반사실의 여부와 함께 관련 사실을 모두 제시해야 할 것, (ii)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죄를 유발한 공적인 정보 또는 언론을 통하지 않는 출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본질적으로 필수적이어야 할 것, (iii) 소환장은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이거나 추측에 의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민사사건에서도 동일함. (iv)소환에 있어서 국가안보의 위협성,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성 등과 같은 필요성이 없다면 언론인과 협상을 고려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조사나 기소의 경우 이 사실을 설명할 것, (v)발부된 소환장은 보도된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확인에 제한될 것, (vi)소환장의 발부는 정보수집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며, 직접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자료만을 합리적인 시간 등을 지켜서 발부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자료의 제출은 금지됨.

## 2. 취재원 보호의 입법방안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자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특권'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취재원보호법이 외형적으로는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의 진정한 역할이 취재원이나 제보자들의 보호를 통해 내부 고발자가 정부나 사기업 분야의 범죄나 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보자나 취재원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재원과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취재원보호법은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언론의 취재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왜냐하면, 정부와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 활동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 언론의 감시기능은 약화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

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까? 취재원보호법 제정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재원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언론사나 기자에게 언론의 자유와 직업윤리에 반하여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제보자가 소속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재원보호법은 정부가 언론사나 기자들이 취재원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할 있도록 보장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취재원이나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취재원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언론사나 기자를 대상으로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수사를 하거나,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목적으로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야 한다. 넷째, 취재원보호법은 언론사나 기자가 제보자 또는 취재원과 관련된 정보와 언론보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법원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해 기자나 언론사에게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가 필요할 때는 수사기관이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정보가 범죄사건의 수사와 관련이 있음과 동시에 매우 중요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한 공익이 취재원 보호를 위한 공익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미국 검찰은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네 가지 수사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수사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자에게 자료를 요청해선 안 된다. 둘째,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아닐 경우 취재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선 안 된다. 셋째, 수사자가 그 증거만을 가지고 이뤄질 경우 자료를 요구해선 안 된다. 넷째, 기자에게 제공받지 않고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료를 요청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수사 기관들도 언론사나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원이나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러한 미국 검찰의 수사 지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V. 나가며

취재원 보호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취재원 보호 없이는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도 기대할 수 없다. 언론인의 양심과 직업적 의무가 전제된다면 취재원의 보호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취재원 보호는 자유로운 언론 취재를 보장하

며 언론을 통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으로 인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취재원 보호라는 전제에서 좀 더 나아가 취재원 보호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있다. 이는 취재원 보호의 범위를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언론인에 한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언론 과정에서의 폭넓은 보호를 의미한다. 물론 이와 같은 취재원 보호 확대는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원 보호는 입법적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잠재적 정보 제공자와 언론인 간에 그들의 언론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명보도의 남발, 정파성, 선정성 등의 문제를 보인 한국 언론이 과연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률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취재원 보호에 대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사법행정기관은 사법행정에 있어서 취재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미국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집행에서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김민정 (2015). 취재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 2) 이규호 (2012). 기자의 취재원 보호와 증거거부권. <민사소송>, 제16권 제2호.
- 3) 이희훈 (2008). 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입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 4) 조재현 (2018).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보호의 입법방향. <한국부패학회보>, 제23권 제2호.
- 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6)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7) 소불이 (2019. 6. 14). “비아이 마약 끝까지 말려…사건 핵심은 ‘양현석’” 한서희가 전한 심경.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14502974?OutUrl=daum>
- 8) Amanda A. Konarski, The reporter's privilege is essential to checks and balances being accessible to the American Electorate, 11 Seton Hall Circuit Rev. 258, 2014.
- 9)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92 S.Ct. 2646, 33 L.Ed.2d 626, 1972.
- 10) Martin Löffler/Reinhard 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C. H. BECK, 2005.